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6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정)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개정이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 6. 1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산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에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 완화

-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산하는 무주택 요건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적용

3. 의견제출

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25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 : (주택기금과) 044-201-3343

○ Fax : 044-201-5530